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 - 07829호

시행일자 2024. 10. 1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966(2024.10.11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약사법」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지 등 성분을 지정하는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에 병용·임부 금지성분을 추가 및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온바,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·개정고시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
3.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 전문 1부. 끝.

대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